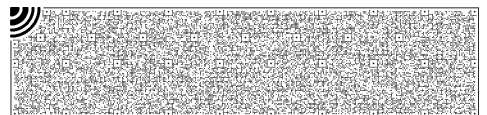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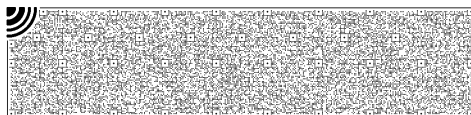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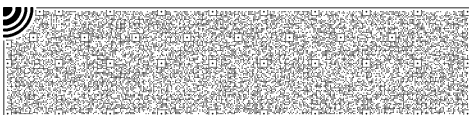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38호

의 안 명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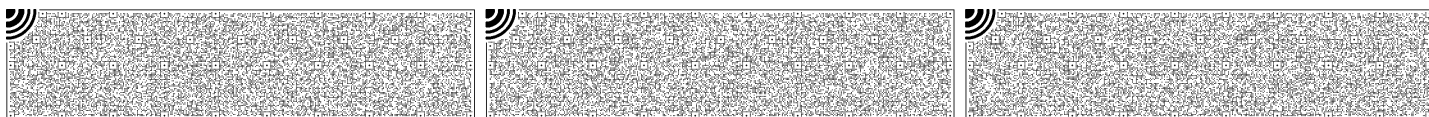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4. 20.

주 문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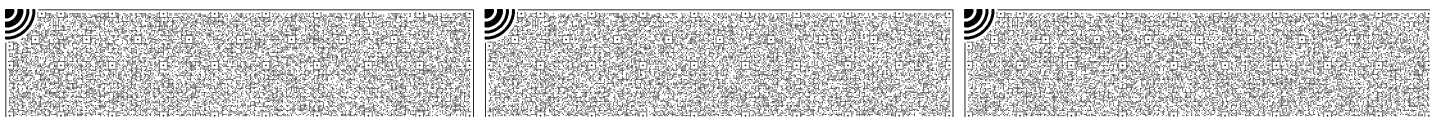
[별 지]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202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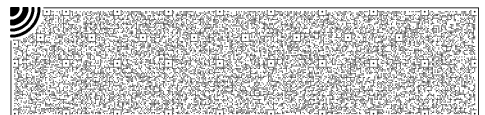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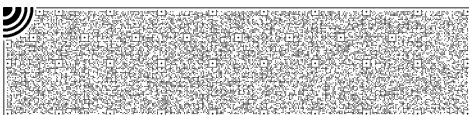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일반 현황	2
III.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1.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3
2. 철탑 점검 및 안내 규정 미비	7
3.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미비	11
IV. 개선방안	13
1. 취약구역에 이중망 설치	13
2. 철탑 점검 및 자율점검 안내 강화	14
3.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15
V. 조치사항	17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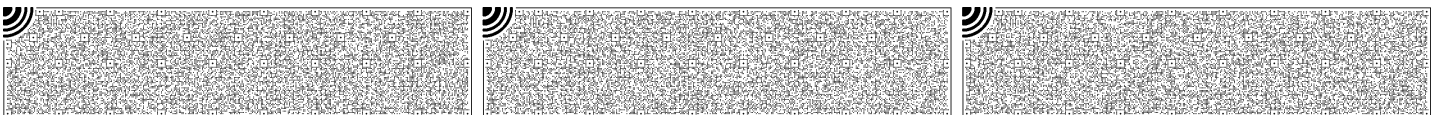
- '23년 기준 골프 관련 산업 규모는 약 22조 원이고, 골프 인구는 700만 명을 상회1)
 - '26년 2월 기준 전국에 1,149개*의 실외골프연습장이 운영되는 등 관련 시설 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
 - *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전국 실외골프연습장 중 약 96% 이상이 민간 소유로 파악되며, 시설 관리의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 「체육시설법」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자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에 전적으로 의존
 - 법적 강제성이 약한 자율점검 방식은 시설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을 적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안전성 확보에 한계
- 실제, 연습장 밖으로 골프공이 날아가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등을 파손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설물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꾸준히 제기

< 국민신문고 > ①그물이 다 해지고 구멍이 나서 골프공이 집 이곳저곳으로 날아옴 (24.6월) ②골프공이 날아와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파손이 자주 발생함. 사람이 맞을까 불안함(24.8월) ③연습타구가 그물망을 벗어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낙하하여 매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음(국민신문고, '24.8월)

< 언론보도 > ①강풍에 골프연습장 훼손: 그물을 지탱하는 철재 구조물 일부는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함(21.4.) ②골프연습장 눈 무게 못 이겨 붕괴 ... 직원 1명 심정지, 골프연습장 그물망, 철재 구조물과 붕괴 ... 주차차량 2대 덮쳐(24.11.)

- 이에 따라 실외골프연습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1) 한국골프산업백서 2024(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유원골프재단)



II. 일반 현황

□ 실외골프연습장 운영 기준

- (시설기준) 「체육시설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신고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시설기준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물·보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
 - ※ 시장·군수 등은 시설기준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가능
- (자율점검) 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
 -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에 등록

□ 실외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1,316개의 실외골프연습장이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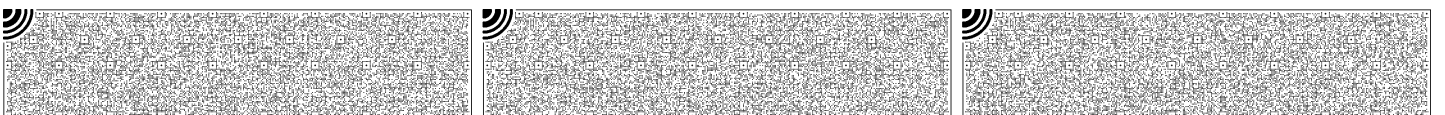
< '24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4년 1.1. 기준) >

	영업장		영업장
서울	143	강원	71
부산	85	충북	62
대구	46	충남	66
인천	34	전북	67
광주	27	전남	86
대전	47	경북	154
울산	36	경남	106
세종	5	제주	35
경기	246	계	1,316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6.2월) 결과 파악된 1,149개 중 96.3%에 달하는 대다수의 시설이 민간 소유로 파악됨

< 소유 주체별 현황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계	지자체 소유			공공 소유(대학교 등)	민간 소유
	직접관리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1,149	9	21	3	9	1,107



Ⅲ.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등급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골프연습장은 연습 중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시설로 그물·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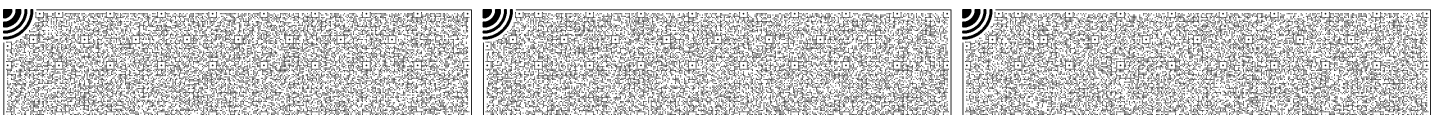
카. 골프연습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u>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u> 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 공통사항

평가 항목	안전망 또는 비구방지망의 설치 및 고정상태, 손상, 노후 여부	코드	체육 00-01
양호	○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손상 및 결함 등이 없는 상태 ○ 안전망이 최상의 상태로 사고 위험이 없는 상태		
주의	○ 해당 종목의 공이 안전망에 끼이거나 통과될 우려가 있는 상태 ○ 일부 처짐이 발생하거나 볼트 누락 등으로 고정이 해제된 상태 ○ 그물망 지지기둥 일부가 기울어짐이 발생하거나 흔들리는 상태 ○ 노후, 파손 등으로 기능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불량	○ 안전망의 30% 이상 파손되거나 노후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 ○ 그물망 지지기둥의 30%이상 기울어짐이 발생하거나 흔들리는 상태		



○ 15-골프연습장

평가 항목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
양호	▶ 타구가 그물, 보호망을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된 상태이면 양호
주의	▶ 타구볼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찢어짐, 처짐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면 주의

문제점

- 통상적인 타구(打球)는 골프연습장 그물망을 벗어나기 어려우나, 불규칙하거나 강한 회전력이 실린 타구의 경우 시설물 이탈 가능성 존재
 - 특히, 노후화된 그물망이 파손되거나 태풍 등 강풍이 더해질 경우, 비구(飛球)가 인근 지역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유발할 개연성 증가
- 지난 4년간 연습장 밖으로 나간 타구를 이유로 제기된 민원 수는 126건으로, 연평균 31.5건이 발생하였으며 증가 추세
 - 일부는 동일한 연습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발생

< 민원발생 현황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0	35	35	36	126

※ 동일한 실외골프연습장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 민원 > 실외골프연습장 타구 사고 방지대책 요구(1차) - 주택 옆에 위치한 연습장의 연습타구가 그물망을 벗어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낙하하여 주택 및 자동차의 손상과 업주의 방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이에 2018년도부터 매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국민신문고, '24.8월)

(2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집 앞마당으로 3월 8일, 3월 16일 1주일 간격으로 공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음. 매년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 되고 대책도 미흡함. 주먹구구식 땀질이 아닌 제대로 보수를 진행해야 함 (국민신문고, '25.3월)

(3차) 2025. 5. 11. 일요일 약 13시경 잔디밭에서 잔디밭을 깎는 도중 골프공에 맞을 뻔 하였음. 언제까지 안전을 담보로 이런 민원을 계속 내야 되는지 의문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골프연습장 사장에게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국민신문고, '25.5월)



< 연습장 밖으로 날아간 골프공에 의한 피해 현황 (○○군 조사결과, '22년) >



- 연습장은 주택가, 주차장·도로 등 주거지나 통행량이 많은 생활 시설 인근에 대다수(88%)가 위치

< 실외골프연습장 주변 환경 (연습장으로부터 100m 이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계	주택가, 건물	주차장, 도로	공원, 체육시설	둘레길, 등산로	농경지	임야, 하천
1,149 (100%)	587 (51.1%)	262 (22.8%)	62 (5.4%)	14 (1.2%)	86 (7.5%)	138 (12.0%)

- 주택지나 주차장, 농경지 등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제기시 임시방편으로 이중망을 설치하는 경향

< 민간 소유 연습장 이중망 설치 현황²⁾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관할 사군구	소계	A	B	C	D	E	F	G	H
계	35	2	3	8	4	4	2	7	5
설치	24	1	3	8	4	2	1	4	1
미설치	11	1	-	-	-	2	1	3	4

< 민원 > ①골프연습장에서 날라온 공으로 인한 피해 - 매년 골프공이 제 토지로 날라 오는데, 혹시나 골프공이 날라와서 제 머리에 맞을까봐 두려움. 그물망을 제대로 수리 보수하여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음 (국민신문고, '23.6월)

②인근 실외골프연습장 피해 - 그물이 다 해지고 구멍이 나서 골프공이 집 이곳저곳으로 날라옴. 집에 5살된 아이가 있어 맞을까봐 걱정이 됨 (국민신문고, '24.6월)

③골프공으로 인한 차량 파손 - 주차를 하고, 당일 17:55분 차량을 확인하니 골프공에 의해 차량 뒷자리 오른쪽 유리 및 몰딩이 파손되어 있었음. 차량 유리가 파손이 될 정도면 골프공에 사람이 맞을 경우에는 중상이나 사망을 할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5.3월)

2) 자료를 제출한 175개 지방정부 중 민간 소유 연습장의 이중망 설치 현황을 제출한 8개 지방정부 자료



- 연습 중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물 및 보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를 법령상 의무화하고 있으나,
- 그물·보호망의 설치 관련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사업주 간 분쟁요소로 작용

< 민원 > **골프연습장 골프공 사고** -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와서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파손이 자주 발생함. 사람이 맞을까 불안함(국민신문고, '23.7월)
 ⇒ 체육시설기준에서 (중 략)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그물·보호망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그물·보호망의 재질, 규격, 설치장소 등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구청, '23.7월)

< 지방정부 의견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❶골프장 안전 그물 및 보호망 설치에 관한 점검 기준 미비하므로, 안전설비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할 필요 ❷체육시설업 신고 시 그물망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천장 부분을 그물망으로 전체를 덮는 등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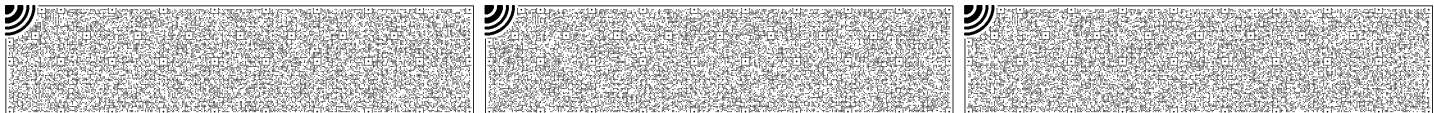
'그물망'에 관한 법령상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문체부)

- **골프연습장업 그물망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연습장업에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의 그물·보호망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그물·보호망의 재질, 규격, 설치장소 등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
- **골프연습장에서 넘어온 골프공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물망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현재 설치한 그물·보호망 시설 규모로는 골프연습장에서 타구한 공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할 것임

'골프장' 사고사례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문체부)

- **"골프장 내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골프공 이탈"**
 - 빗맞은 공이 골프장을 벗어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의 뒤편 유리창을 강타함. 이 사고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운전자에게도 유리파편이 튀어 오른팔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함

<개선> ▶ **골프공 이탈 위험지역에 안전망 설치**



2. 철탑 점검 및 안내 규정 미비

현황

- 「체육시설법」은 지자체장 등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함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별표 1의2) >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생략)
- 2) 점검 항목
 -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 평가기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중략)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 고시)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동 지침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에서 점검항목으로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 등을 명시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문체부)에서 점검 방법 등을 구체화

- 체육시설업자는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하여 제출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

1.3 적용범위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유형별 점검 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 (해당시설 연면적)	점검분야			점검 주기	비 고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대형시설	5,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1·2층 시설)
중형시설	500 ~ 5,000㎡ 미만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층 시설)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층 시설) 제외
소형시설	500㎡ 미만	○	○	○	반기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 표 내의 '*'로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등급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준 (안전 부문)	○ (골프연습장)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	
		○ (골프연습장) 타석 간 간격(2.5m 이상) 적정성 여부	
		○ (골프연습장) 타석과 타석 뒤 보행 통행로와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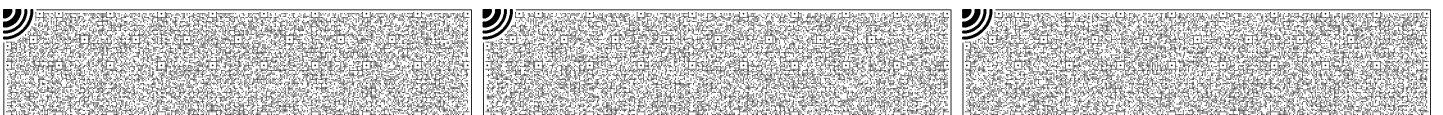
-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관련 평가항목별 기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문체부)에 규정

< 골프연습장 안전점검표 -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 >

○ 15 - 골프연습장

< 코드: 체육 15-01 >

평가 항목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
양호	▶ 타구가 그물, 보호망을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된 상태이면 양호
주의	▶ 타구볼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찢어짐, 처짐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면 주의



문제점

- '소규모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자율점검시설로서, 해당 시설업자의 점검분야에서 **철탑은 제외**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관련 점검 항목으로 '그물·보호망의 적정 설치 여부'는 명시되어 있으나 최대 높이 70여m에 달하는 철탑은 점검 대상에 미포함

<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시설물 현황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실외골프연습장	준공연도	철탑	철탑 최대 높이	정밀안전점검	결과
□□	2003년	22개	42~67m	실시	C등급
◎◎	2008년	16개	32m	실시	D등급

*지방도시관리공단·지방정부가 철탑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실시

- 골프연습장 내 철탑은 실외에 설치되어 **기후변화(강풍·폭설, 한파·폭염)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 연습장이 '03년 938개로 파악되고 이후 증가한 점으로 보아 준공연도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천여 개로 추정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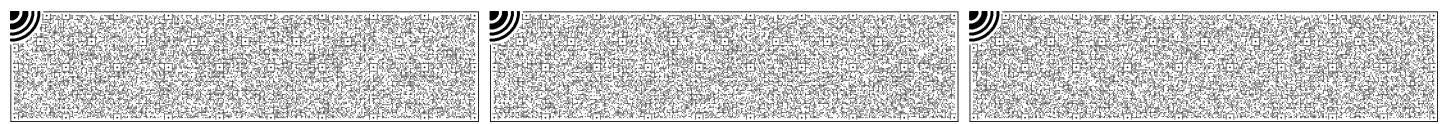
< 실외골프연습장 현황 (문체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매년 1.1. 기준) >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938개	1,235개	1,315개	1,199개	1,316개

< ◎◎골프연습장(그물망 구간 철탑)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군, '26.1월) >

- 준공일: 2008년 12월 · 안전등급: D등급
- 점검 결과: 강제 철탑, 트러스의 표면부식, 플랜지 접합부 부식, 용접부 부식 및 용접불량 등은 **경과 연수에 의한 노후화** 시공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변형(휨) 및 배부름, 찢어짐, 볼트 접합부 볼트 풀림, 용접 접합부 탈락 등은 **그물망 사용 시 외력 등에 의한 좌굴 변형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보수·보강: 원상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보강 또는 교체 등이 필요

< 시설물 점검 현황 >



○ 실외골프연습장은 자율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여 자율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부 민간 소유시설은 안전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자율안전점검 실시 여부 파악 곤란

※ 지방정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연 2회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 입력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음

< 민간 소유 연습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³⁾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관할 시·군·구		소계	a	b	c	d	e	f
계		39	2	10	8	8	4	7
자율 안전점검	실시	22	1	8	6	2	2	3
	미실시	11	1	-	2	6	2	-
정기 안전점검	실시	6	-	2	-	-	-	4
	미실시	-	-	-	-	-	-	-

○ ‘체육시설알리미’에 공개된 자율안전점검결과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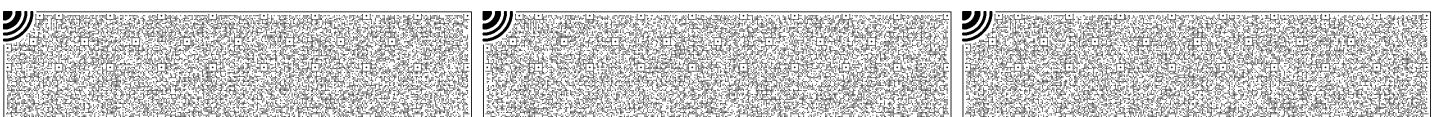
- ◇◇시 소재 11개 연습장 중 4개는 '19년 이후 한 번도 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자율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결과 파악이 불가하여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

※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19.4.17.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공개되고 있으며, 안전점검 현황은 매월 6월 30일, 12월 31일에 업데이트

< 자율안전점검 결과 최종 등록 현황 (체육시설알리미, ◇◇시 소재 연습장, '26.2월) >

계	없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	4	-	2	3	1	-	1	-

3) 자료를 제출한 175개 지방정부 중 민간 소유 연습장의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제출한 6개 지방정부 자료



3.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미비

현황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문체부)에서 체육시설 안전 점검, 자연재난시 대응체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 관련 내용은 없어 체계적인 관리 곤란

문제점

- 기상이변으로 습설(濕雪)* 등 폭설이 내리거나 태풍 등 강풍이 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지만,

-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재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 무거움. 동일면적 기준, 건설(乾雪)에 비해 약 2~3배 무거움

< 폭설로 인한 철탑 등 붕괴 >

< 2024년 >



< 언론보도 > ①골프연습장 눈 무게 못 이겨 붕괴 ... 직원 1명 심정지 제설작업 중 위에 있던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의 그물망이 갑자기 눈과 함께 무너지면서 직원들을 순식간에 덮침(24.11월) ②골프연습장 그물망 철재구조물과 붕괴 ... 주차차량 2대 덮쳐. 오전 가로 55m, 세로 180m 골프장 하부 그물망에 눈이 쌓이면서 1.2층 주차장으로 그대로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됨(24.11월) ③골프연습장 기능 상실. 더 큰 문제는 최근 천6백만원을 들여 낡은 시설을 보강했는데, 지난달 폭설로 그물망을 설치한 기둥이 무너져 골프연습장 기능마저 잃어버림(25.2월)

< 강풍으로 인한 그물망 붕괴 >

< 2012년 >



< 2021년 >



< 언론보도 > ①태풍으로 골프연습장 붕괴 - 강풍은 골프연습장을 무너뜨림. 바람이 크게 불면서 왼쪽으로 쓸렸다가 다시 한번 큰 강풍이 급습해 15분 후에 오른쪽으로 무너져 내림(12.8월) ②강풍에 골프연습장 훼손 - 골프연습장 그물이 강풍에 찢겨 펄럭임. 그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도 강풍이 불 때마다 휘청이며, 일부는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함(21.4월)



'골프장' 사고사례 (2023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 골프연습장, 문체부)

□ "태풍으로 인한 골프장 철탑 붕괴"

- 2012년 8월 태풍 블라벤에 의하여 ○○ 골프장의 철제 지지대가 힘없이 붕괴하면서 인근 식당을 덮치는 일이 발생
- 전문가에 따르면 강풍이 불었을 때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골프장 한쪽 면이 20t의 힘을 받지만 그물이 있을 때 걸리는 힘은 320t으로 기둥 하나당 32t을 지탱하는 셈이라고 판단

⇒ 바람에 취약한 공작물은 강풍에 대비한 안전 진단을 의무화해야 함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내의 철탑이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 건축물의 경우 바람, 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건축 인·허가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고판, 교회 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권고

- 실태조사시 지방정부에서도 폭설·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관리 관련 매뉴얼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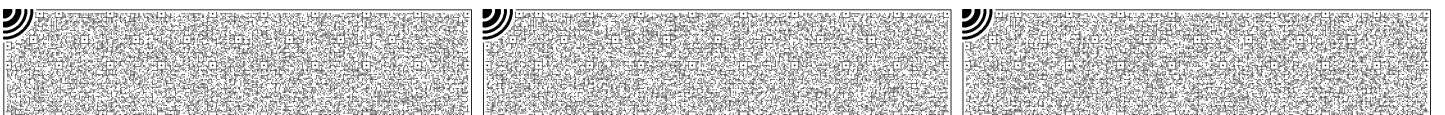
< 지방정부 의견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2월) >
 실외골프연습장의 특성상 기후(강풍, 제설) 영향을 받고 있어 시설관리의 체계적 관리 곤란
 ⇒ 실외골프연습장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매뉴얼 필요.
적설량에 따른 철탑 위험도 여부와 강풍 세기에 따른 그물망 하강 높이를 판단하고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매뉴얼) 필요

- 일부 실외골프연습장에는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망 자동화(Winch) 장치***를 설치·운영

*돌풍이 닦쳤을 때 철탑과 그물망을 보호, 철탑에 윈치를 설치하여 그물망을 상·하로 조절

참고: '그물망 자동하강 작동 기준(퇴근 등 사업장에 근무자 부재 대비)'
 (△△시설관리공단 ◇◇연습장)

- ① 일기예보 상 강풍 예보시 자동운전 선택
- ② 바람이 초속 10m로 5초간 유지
- ③ 그물망 1/2 정도 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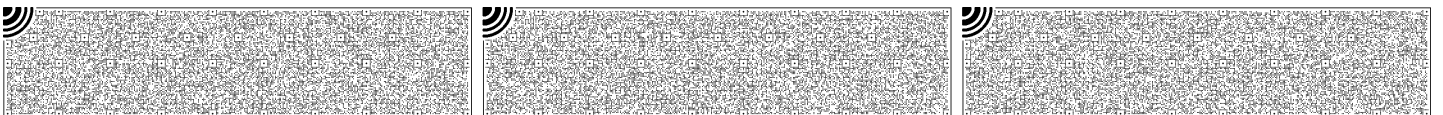
IV. 개선방안

1. 취약구역에 이중망 설치

-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 안전 취약 구역에 이중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반영
 - 주변(예시: 100m 이내)에 주택가, 건물, 주차장 및 농경지 등이 있어 구역을 벗어난 골프공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안전취약구역에 대한 이중망 설치는 주 그물망 파손 시에도 비구(飛球)의 외부 유출을 차단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이중 안전 장치로 기능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5- 골프연습장에 반영

현 행		개 선 (예시)	
양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구가 그물·보호망을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된 상태이면 양호 ○ <신설> 	양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u>주변에 주택가, 건물, 주차장 및 농경지 등이 있어 구역을 벗어난 골프공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이중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양호</u>



2. 철탑 점검 및 자율점검 안내 강화

- 실외골프연습장의 그물·보호망을 지탱하고 있는 철탑을 자율점검 항목에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반영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예시) >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등급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준 (안전 부문)	○ (골프연습장) 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단, 그물·보호망을 지탱하고 있는 철탑을 포함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점검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신설

현 행	개 선 (예시)				
▶ 그물·보호망 관련 양호/주의 기준만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점검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철탑</td> <td> ▶ 표면 부식이 있는가? ▶ 용접 접합부에 결함이 있는가? ▶ 변형, 배부름, 찢어짐이 있는가? ▶ 와이어로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 망 고정용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가?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철탑	▶ 표면 부식이 있는가? ▶ 용접 접합부에 결함이 있는가? ▶ 변형, 배부름, 찢어짐이 있는가? ▶ 와이어로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 망 고정용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가?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철탑	▶ 표면 부식이 있는가? ▶ 용접 접합부에 결함이 있는가? ▶ 변형, 배부름, 찢어짐이 있는가? ▶ 와이어로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 망 고정용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가?				

< 참고: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24.3월) >

출렁다리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명: OO출렁다리		점검일시 : 2000. 00. 00		점검자: OOO		
구 분	점 검 항 목			양호	보통	불량
출렁다리 주요 요소						
주 케 이 블	주케이블 손상 및 부식진행 여부 주케이블 정착부 체결상태 및 마킹 위치 변동여부					



행어	행어 <u>손상(균열, 변형, 파단 등)</u> 및 부식 여부 행어가 느슨해져 있는지의 여부 행어 케이블 밴드와의 체결상태(체결 볼트 조임, 풀림) 및 부식 여부
바닥 프레임	바닥프레임 <u>손상(균열, 변형, 부식, 파단 등)</u> 여부 바닥프레임 <u>연결 볼트 풀림, 탈락</u> 여부 바닥프레임 <u>도장상태 이상</u> 여부

○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문자 발송 의무 명시

- '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안내하는 정기 안내 문자 등을 전송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점검 미 실시 시설 확인 후 연중 수시로 점검 실시 독려 문자 등 발송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반영

현 행	개 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안내하는 정기 안내 문자 전송 ▶ 지자체장은 자율점검 미 실시 시설을 확인하고, 연중 수시로 문자발송 등 필요한 독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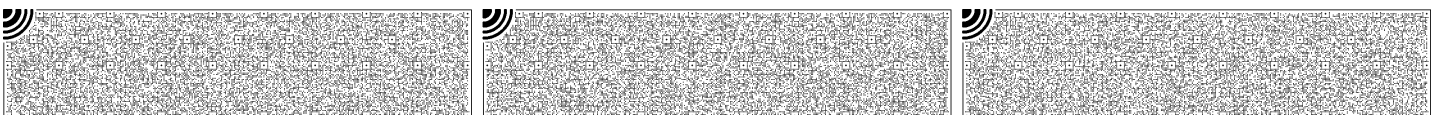
3.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 강풍이나 폭설 등 비상시 시설물(철탑·그물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원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반영

현 행	개 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 	<p>< 철탑 및 그물망 비상시 대응체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시 풍속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 (예시) <table border="1"> <tr> <td>2단 계</td> <td>10m/s 이상 ~ 12m/s 미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그물망 5.2m 하강(철탑 4칸) - 철탑 시설물 점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비상 근무 정상 운영 (드라이버 불가) </td> </tr> </table>	2단 계	10m/s 이상 ~ 12m/s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그물망 5.2m 하강(철탑 4칸) - 철탑 시설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비상 근무 정상 운영 (드라이버 불가)
2단 계	10m/s 이상 ~ 12m/s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그물망 5.2m 하강(철탑 4칸) - 철탑 시설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비상 근무 정상 운영 (드라이버 불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시 시설물 관리 방법 (예시) - (조치 시점) 내린 눈으로 인해 타구가 굴러 내려오지 않을 때 - (조치 방법) 지면에서 바닥 그물망에 부착된 로프를 이용하여 쌓인 눈을 털어냄 ※ 다른 방법으로 제설 시에도 안전에 유의
----	---

참고: '강풍시 그물망 운영 매뉴얼' (△△시설관리공단 ◇◇연습장)

단계	풍속	풍속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6m/s 이상 ~ 10m/s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시설물 점검 	직원 평시 근무
2단계	10m/s 이상 ~ 12m/s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그물망 5.2m 하강(철탑* 4칸) - 철탑 시설물 점검 	직원 비상 근무 정상 운영 (드라이버 불가)
3단계	12m/s 이상 ~ 15m/s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그물망 13m 하강(철탑 10칸) - 철탑 시설물 점검 - 전 타석 운영 중단 및 이용객에게 안내 문자 전송 	직원 평시 근무 임시휴장 (시설이용 불가)
4단계	15m/s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 확인(풍속계) - 철탑, 그물망 보호를 위해 바닥망 부분까지 하강 - 철탑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피해상황 확인 	직원 평시 근무 임시휴장 (시설이용 불가)

*철탑구조물 1칸 높이 = 약 1.3m

○ 자동하강 작동 기준 (퇴근 등 사업장에 근무자 부재 대비, 11p 참고)

※ 설정값 기준: '12년 태풍피해 관련 건축구조기술사 피해복구 관련 내용

(당초설계: 20m/sec, 설계시공: 75% 15m/sec, 골프장 강풍시 10m/sec 그물망 하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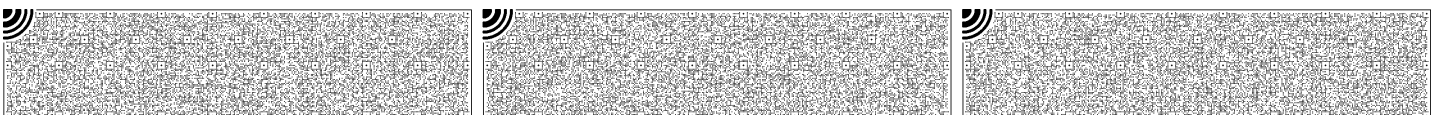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① 취약구역에 이중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이 빈번한 안전취약 구역에 이중망 설치 - 주변(예시: 100m 이내)에 주택가, 건물, 주차장, 농경지 등이 있어 구역을 벗어난 골프공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② 철탑 점검 및 자율점검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자율점검 항목 대상에 명시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의 점검요소를 구체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반영 	
③ 강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 강풍 및 폭설시 시설물 관리 방법 구체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 반영 	

□ 조치기한 : 2026. 12월



참고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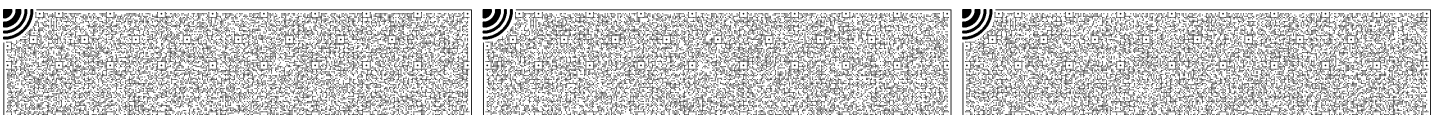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



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와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 라. 땅꺼짐·흩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가.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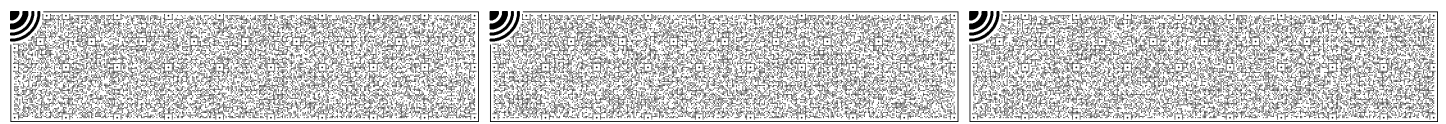
-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 2) 점검 항목
 -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 2) 점검 항목
 - 가)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다)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마)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바)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아)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 자)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평가기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른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 가.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 나. 주의: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 다. 사용중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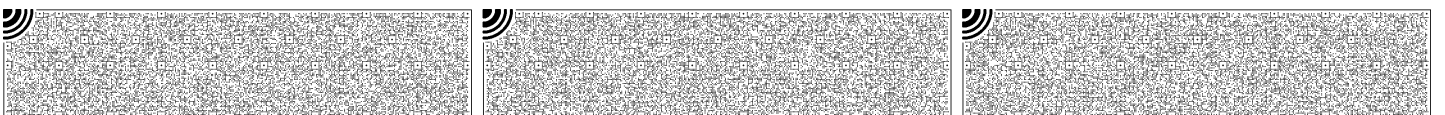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협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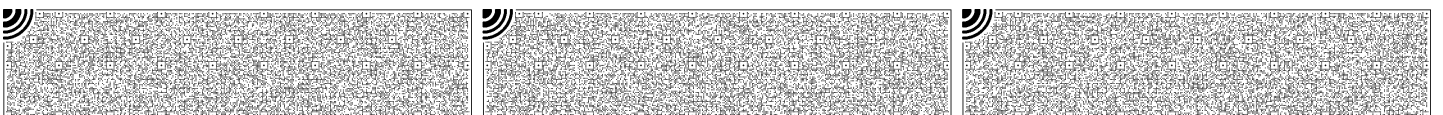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깁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구분	시설 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시행 2020.12.22.)

1.1 목적

-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1.3 적용범위

-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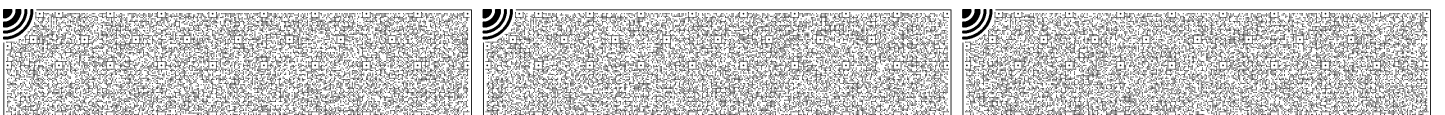
[시설유형별 점검 항목 및 주기]

구분	기준 (해당시설 연면적)	점검분야			점검 주기	비고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대형시설	5,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1·2층 시설)
중형시설	500㎡ ~ 5,000㎡ 미만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층 시설)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층 시설) 제외
소형시설	500㎡ 미만	○	○	○	반기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 표 내의 ‘*’로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 1년 이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특별조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점검을 받은 시설은 소방시설 분야 점검 제외(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1.4 용어 정의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안전점검"이란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체육시설 관리주체"란 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관리·운영하는 자가 다를 경우 해당 체육시설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본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이란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 "긴급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 "손상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 "특별점검"이란 주요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정밀점검"이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정해진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5 특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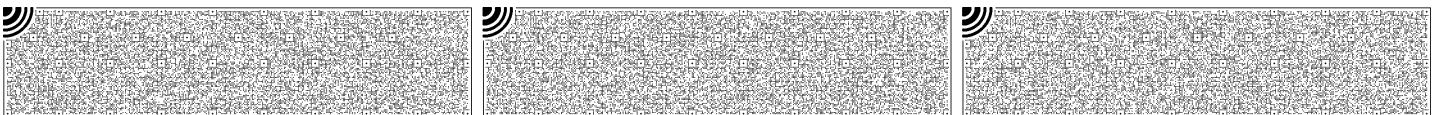
-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 다음의 안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
-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전자파일(pdf)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국가의 재난상황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으로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사변, 전염병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

시설명(주소)		점검일자				
소유자(연락처)		점검자				
구분	점검항목	등급			해당 없음	
		양호	주의	불량		
소방시설	○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		
	○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설 기준 (안전 부문)	○ 한국산업규격 KS 조도 기준 A3011 : 1998			/	
		○ 구급 약품 비치 여부			/	
		○ 환기시설 설치 여부			/	
		○ 어린이 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 여부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	
		○ 높이 3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계단 제외) 주변 높이 1.2m이상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			/	
		○ (체육도장)3.3m ² 당(1명 이하) 수용인원 적정성 여부			/	
		○ (체육도장)바닥면의 안전성(충격) 여부			/	



	○ (골프연습장)그물·보호망 적정 설치 여부				
	○ (골프연습장)타석 간 간격(2.5m 이상) 적정성 여부				
	○ (골프연습장)타석과 타석 뒤 보행 통행로와 거리 적정성 여부				
	○ (당구장)당구대 1대당 16m ² 이상의 면적 확보 여부				
	○ (체력단련장)바닥면 충격흡수 여부				
	○ (스크린골프장)타석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적정성(3m 이상) 여부				
	○ (스크린골프장)타석과 천장과의 높이 적정성 여부				
	○ (스크린골프장)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 적정성 여부				
	○ (스크린골프장)벽 충격흡수 재질 적정성 여부				
	○ (스크린골프장)스크린과 뒤 벽면의 이격 여부				
	○ (스크린골프장)바닥의 눈 슬립 재질의 적정성 여부				
	○ (스크린골프장)대여용 장비의 안전·위생 관리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6m 이상) 적정성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과 천장높이(2.4m 이상)의 적정성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 중앙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 거리(1.5m이상) 적정성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의 적정성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실 모든 벽에 대한 충격흡수 재질의 적정성 여부				
	○ (스크린야구장)스크린과 뒤 벽면의 이격 여부				
	○ (스크린야구장)바닥의 눈슬립 재질의 적정성 여부				
지도자 배치	○ 규모별 적정 지도자 배치 여부				
안전·위생 기준	○ 이용질서 유지 여부				
	○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정상 이용 가능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대응 및 대비 여부				
	○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시행 여부				
	○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및 피난 방법 고지 여부				
	○ 사망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 여부				
	○ 안전·위생 매뉴얼 작성, 게시 및 반기별 1회 교육 여부				
	○ 안전수칙 게시 여부				
	○ 체육시설 내 조명 또는 광고판 등 부착물 안전설치 여부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체력단련장)기구 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 (스크린야구장)안전장비 착용 지도 여부				
	○ (스크린야구장)대여용 안전장비 위생관리 여부				
	○ (스크린야구장)타석 1인 입장 준수 여부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4월 20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최 진 영

위원 권 석 원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홍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올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4. 20.

국 민 권 의 위 원

